[별표 6] <개정 1996·12·31>

사망일시금지급구분표(제28조관련)

| 사 망 자 별 | 지 급 액 |
|---|---|
| 1. 전상군경·공상군경·4.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| |
| 가.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| 1,460 |
| 나. 상이등급 2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 | 1,208 |
| 다. 상이등급 2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인 자 | 700 |
| 2. 재일학도의용군인 | 700 |
| 3. 연금 지급대상인 유족 | 700 |